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4년 5월 생산은 전월대비 0.7% 감소(전년동월대비 2.2% 증가)

- 전 산업 생산은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하였음.
 - － 전년동월대비로는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2.2% 증가하였음.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으나, 기계장비, 자동차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1%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늘었으나,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5%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2024년 5월 소비는 전월대비 0.2%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4.1%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 승용차 등 내구재(0.1%)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2.9%)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3.1% 감소).
- 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2.3%) 및 정밀기기 등 기계류(-1.0%)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4.1% 감소하였음(전년동월대비 5.1%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4.6%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29.9% 감소하였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1	2022	2023	2022				2023				2023	2024	
					1/4	2/4	3/4	4/4	1/4	2/4	3/4	4/4	5월	4월p	5월p
생산	전 산업	5.4	4.6	1.0	1.2	1.2	0.3	-0.7	0.1	0.6	1.0	0.7	1.3	1.2(3.3)	-0.7(2.2)
	광공업	8.5	1.0	-2.6	2.5	-2.2	-3.6	-4.8	0.4	2.6	1.3	2.2	3.5	2.4(6.2)	-1.2(3.5)
	제조업	8.8	0.9	-2.6	2.3	-2.2	-3.7	-4.9	0.3	3.0	1.3	2.2	3.6	2.7(6.5)	-1.1(3.8)
	건설업	-6.7	2.8	7.3	-1.5	1.5	1.5	4.3	2.8	1.1	1.1	-2.5	0.7	4.2(-0.1)	-4.6(-3.8)
	서비스업	5.0	7.0	3.2	0.6	3.3	1.6	0.3	1.0	0.0	1.0	0.3	-0.3	0.7(2.3)	-0.5(2.3)
소비	소비재 판매	5.8	-0.3	-1.5	-0.9	-0.7	0.8	-1.5	0.6	-0.5	-1.9	0.4	0.5	-0.8(-2.2)	-0.2(-3.1)
투자	설비투자	9.6	3.3	-5.4	1.8	-1.5	9.6	-1.5	-8.0	1.0	-3.1	3.1	1.6	-0.3(-2.2)	-4.1(-5.1)
물가		2.5	5.1	3.6	1.6	1.9	1.1	0.4	1.1	0.6	1.0	0.7	0.0	0.1(2.7)	-0.2(2.4)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을 포괄함.
- 3) 2022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3년 6월, 2024년 5월, 2024년 6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4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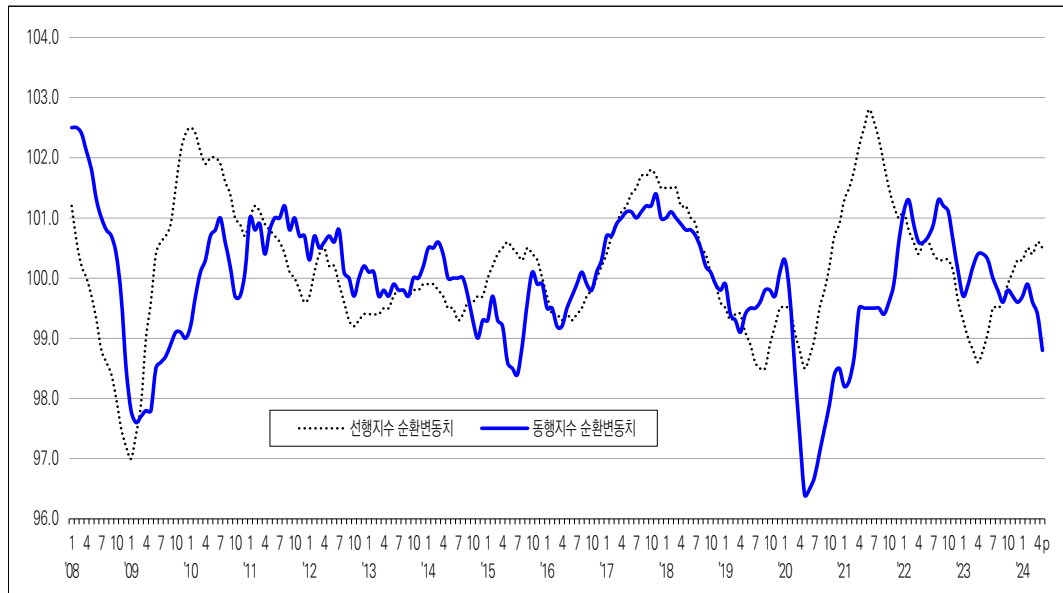
○ 2024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100)로 전월대비 0.2% 하락하였음(전년동월대비 2.4%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음식·숙박(0.3%), 주택·수도·전기·연료(0.1%), 기타 상품·서비스(0.4%), 주류·담배(0.1%)는 상승, 교육, 의류·신발, 통신은 변동 없으며, 오락·문화(-0.1%), 가정용품·가사서비스(-0.1%), 보건(-0.3%), 식료품·비주류음료(-1.0%), 교통(-1.5%)은 하락하였음.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2% 하락하였고,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3% 하락하여 전월대비 0.2% 하락하였음.

◆ 2024년 5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감소,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6p 하락하였음.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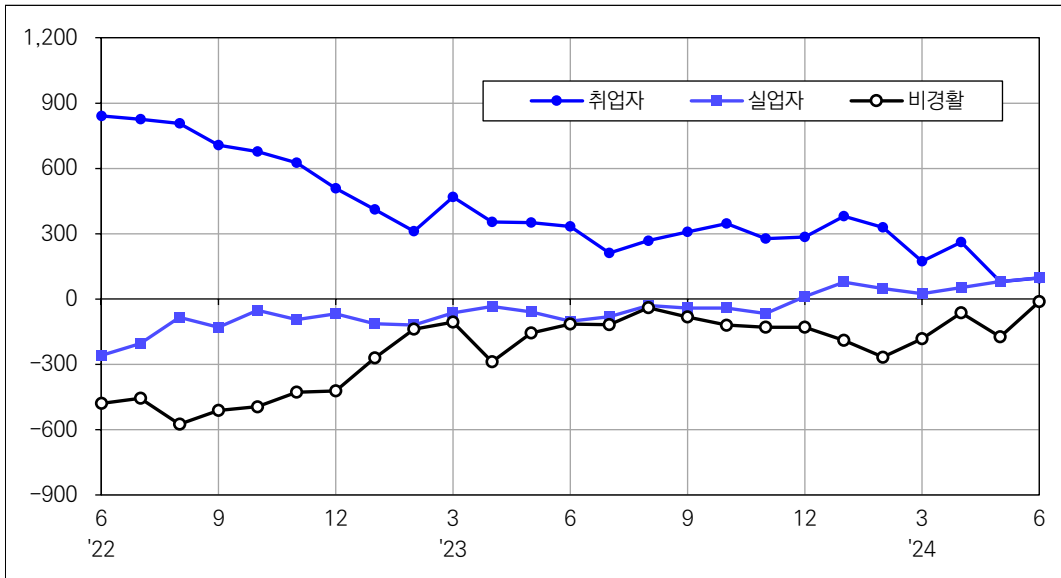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고용 동향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 둔화, 전월대비 취업자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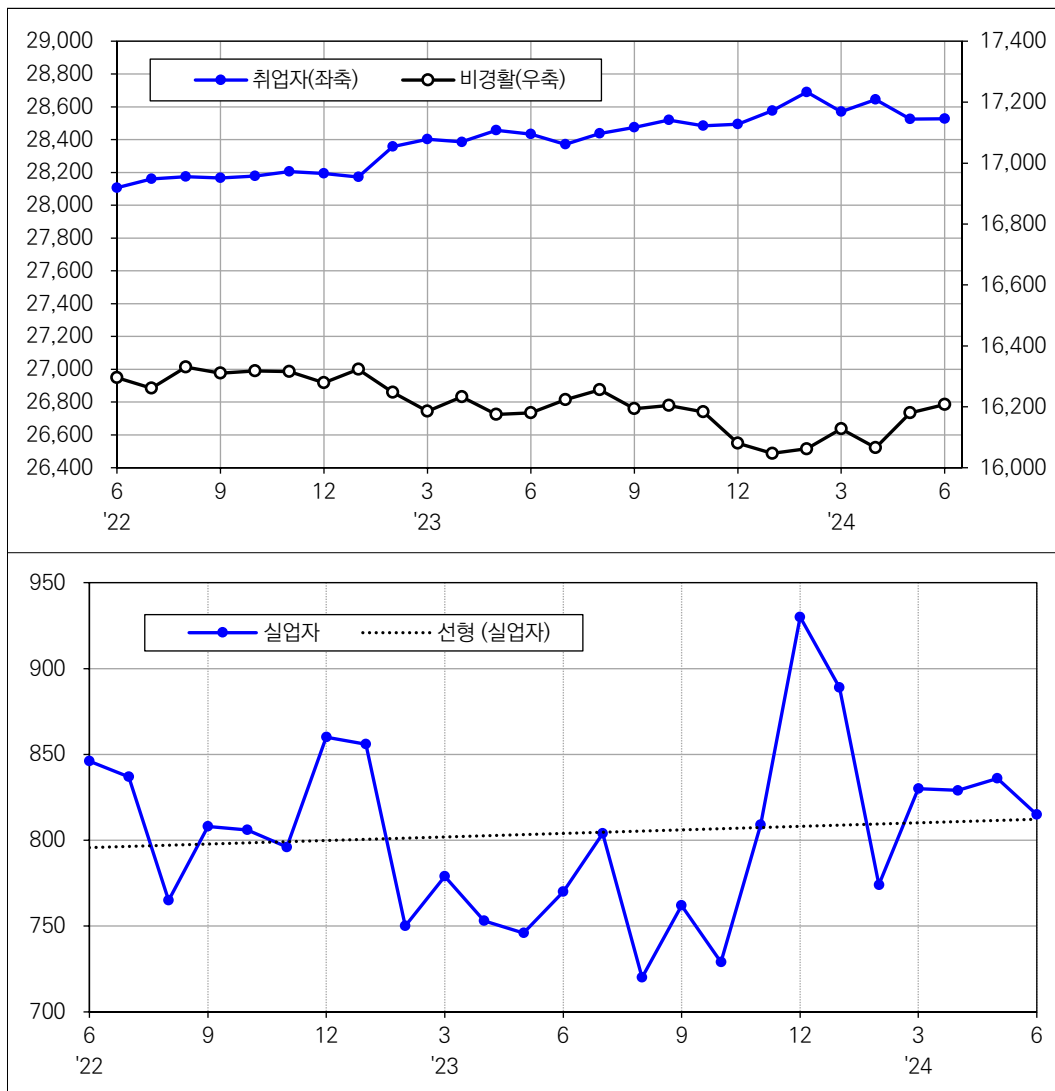
- 2024년 6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9만 6천 명 증가하였음(전월대비¹⁾ 2천 명 증가).
 - (연령별) 30대 여성 고용률 증가와 남성 고용률 감소가 지속되었음.
 - (제조업) 전자제품, 의료정밀, 의료용 물질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고, 식료품, 자동차, 금속가공, 전기장비 등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계속되었음.
 - (종사상 지위별) 다양한 조사에서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 (비경제활동인구) 남성 '쉬었음'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계속되었음.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 증감 현황(상) 및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하)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1]의 계속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별) 20대, 40대 취업자가 3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60대 고령층 취업자 증가가 계속되었음.
 - 20대 청년층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늘었고, 간호간병 관련(여성·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상용직·전문가) 고용 감소폭이 컸음.
 - 20대 남성은 제조업, 건설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음.
 - 30대 여성 고용은 기존 증가세를 이어가고, 남성 고용은 도소매, 운수창고 중심으로 부진하였음.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취업자	-12	-6	-14	(-6)	-77	-168	-135	(-15)	132	74	91	(16)
실업자	7	8	3	(-3)	4	21	-18	(-26)	-6	18	24	(13)
비경황	-23	-33	-22	(7)	-133	-65	-60	(19)	-123	-84	-101	(-28)
실업률	4.7	4.1	2.0	(-1.5)	0.3	0.8	-0.2	(-0.6)	-0.2	0.3	0.4	(0.2)
고용률	-0.5	-0.2	-0.5	(-0.2)	0.8	-0.6	-0.1	(0.0)	1.9	1.0	1.2	(0.2)
	40대				50대				60세 이상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4월	5월	6월	(전월비)
취업자	-90	-114	-106	(0)	16	27	2	(-8)	292	265	258	(9)
실업자	11	11	18	(8)	26	13	7	(-12)	39	26	17	(4)
비경황	-68	-49	-67	(-21)	33	43	83	(28)	140	176	189	(26)
실업률	0.2	0.2	0.3	(0.1)	0.4	0.2	0.1	(-0.1)	0.5	0.3	0.1	(0.1)
고용률	0.4	0.1	0.2	(0.2)	-0.5	-0.4	-0.8	(-0.2)	0.6	0.3	0.3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별)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부진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고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음.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농림어업	5	-34	-33	56	-38	-7
광업	1	-1	-2	0	0	0
제조업	100	38	9	37	-36	8
전기·가스·증기	11	8	4	0	-3	-2
수도·원료재생	-9	-10	-1	-3	0	-2
건설업	5	-47	-66	-22	-66	-21
도매 및 소매업	-39	-73	-51	-17	-17	6
운수 및 창고업	52	49	47	6	5	0
숙박 및 음식점업	29	80	47	27	36	-33
정보통신업	68	47	75	-11	15	26
금융 및 보험업	-2	1	20	13	1	18
부동산업	-23	-6	-15	-3	7	-8
전문·과학·기술	45	7	30	-24	-8	9
사업시설관리지원	-66	-64	-62	-7	1	-3
공공행정·사회보장	26	22	32	-14	2	10
교육서비스업	-49	-45	-63	-17	12	-5
보건 및 사회복지	93	94	120	33	7	11
예술·스포츠·여가	15	6	10	36	-4	7
협회·단체·수리·기타	-3	13	-5	-1	1	-17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3	-3	1	5	-4	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 5월에 줄어든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 취업자 증가폭은 유지되었음.

- 상용직은 산업별로 제조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음.
- 임시직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음.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상용직	293	75	139	61	-78	48
임시직	200	249	204	55	29	-60
일용직	-147	-116	-27	-25	-2	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0	4	34	-4	12	2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업자)	-94	-114	-135	-23	-9	6
무급가족종사자	10	-19	-27	16	-26	-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농림어업	13	12	7	1	5	7	-1	5	-12	10	8	13	-22	-43	-35
제조업	48	-11	-36	52	32	17	-7	0	-2	10	12	14	-4	-1	10
건설업	-2	-40	-31	38	19	21	-49	-43	-46	13	-3	12	3	2	-23
도소매	57	30	24	-39	-39	-21	-9	-10	-9	-13	16	6	-32	-41	-45
운수창고	35	29	48	21	26	12	-10	0	4	5	-6	4	-1	-13	-20
음식숙박	-2	23	0	59	95	84	-2	-10	-7	-4	5	-4	-22	-6	-15
정보통신	42	22	58	13	8	-1	-5	-3		-3	-16	3	20	20	14
금융보험	-2	-6	8	5	14	17	-2	-3		0	-2	-2	-4	-2	0
부동산	-5	-10	-18	-14	-2	-5	1	-1	-2	-2	-1	4	-3	5	4
전문과학기술	39	3	16	14	11	15	-5	-3	-8	-8	1	-5	3	-3	5
사업관리지원	-8	-9	2	12	-2	-9	-45	-27	-30	-11	-3	-12	-11	-13	-11
공공행정	10	-4	18	17	22	15	-1	4	-1	-	-	-	-	-	-
교육서비스	39	17	19	-77	-54	-67	-1	2	-3	0	-12	-2	-9	-9	-10
보건복지	19	-4	31	86	101	94	-2	0	-2	-10	-3	-5	1	1	3
예술스포츠	10	9	-3	-14	-7	-3	-4	-5	3	7	-4	8	10	2	4
협회단체	0	17	-2	25	19	21	-12	-11	-8	6	7	1	-22	-15	-14
가구 내 고용	-1	-1	-2	2	0	8	4	-3	-5	-	3	-5	-3	-2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비경제)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2만 1천 명 증가하였음.

- 1년 이내 일자리 경험이 있는 실업자 중 전직 제조업, 건설업 종사 실업자가 늘었음.
- 남성 '쉬었음' 사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늘었음.

〈표 5〉 전직 일자리 유무 및 주요 종사산업별 실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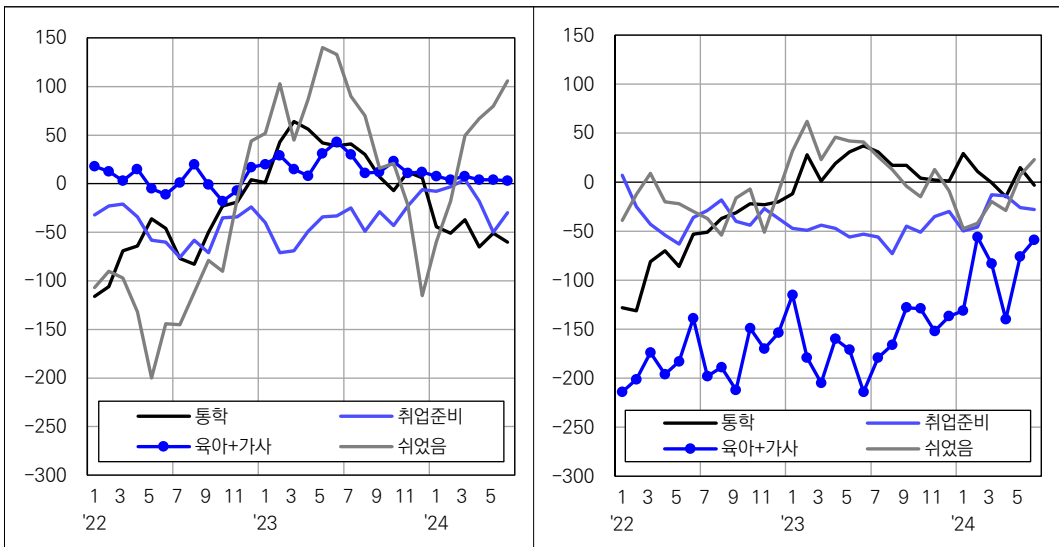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2024년 6월					
	전체	15~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실업자 전체	50	-15	24	18	7	17
1년 이내 일자리 경험 유	43	-2	18	6	8	13
농림어업	3	0	0	3	0	1
제조업	23	13	18	-8	3	-3
건설업	23	3	2	1	6	11
도매 및 소매업	-6	-6	-4	6	-5	3
운수 및 창고업	-1	0	1	0	-1	-1
숙박 및 음식점업	-13	-10	0	2	-1	-5
정보통신업	11	0	2	9	2	-2
금융 및 보험업	-1	-4	0	2	1	0
전문·과학·기술	7	0	8	-1	-2	2
사업시설관리지원	-8	-1	-8	0	2	-2
공공행정·사회보장	-2	0	0	-1	-2	1
교육서비스업	1	1	-2	-1	1	3
보건 및 사회복지	-4	5	-5	-7	1	3
예술·스포츠·여가	0	-1	1	0	-1	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성별(좌 : 남성, 우 : 여성) 및 사유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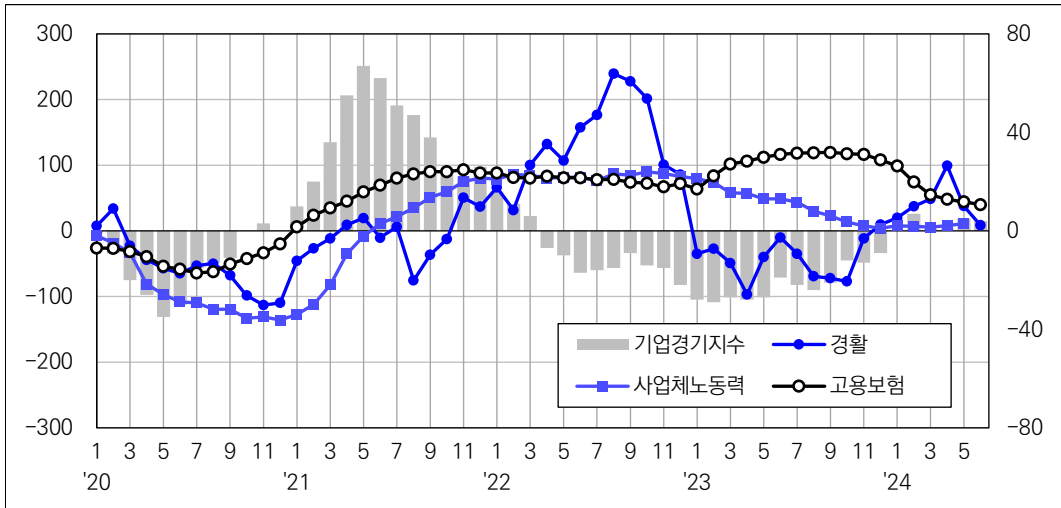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감소, 건설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

○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하였고,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취업자는 8천 명 증가하였음.

[그림 3]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4]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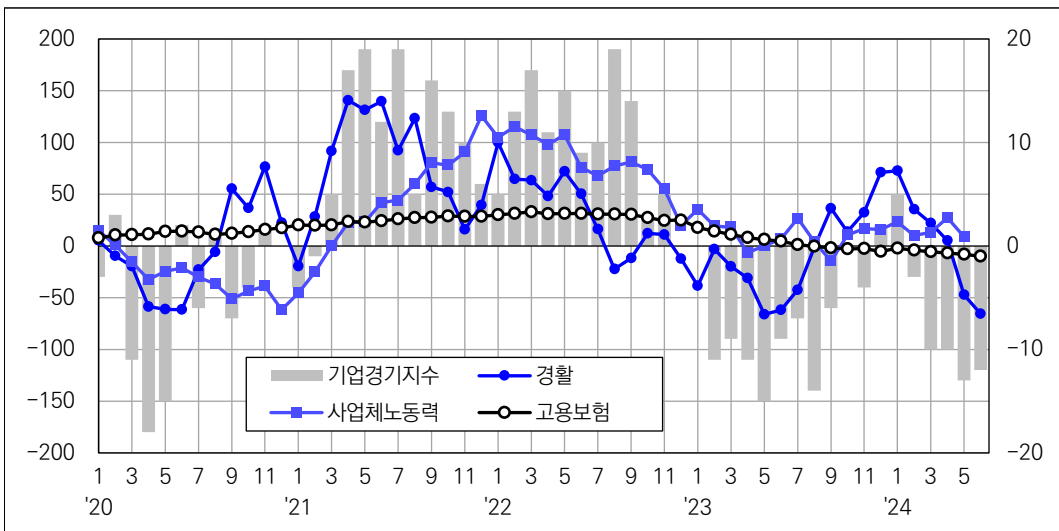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는 지난해 기저 변화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임을 감안해야 함.
 -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 둔화가 지속되는 중이며, 외국인을 제외하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음.
-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만 6천 명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2만 1천 명 감소하였음.
- 건설업 계절조정 취업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피보험자도 10개월 연속 감소하였음.
 - 6월 건설업 계절조정 취업자는 1월 수치보다 14만 4천 명 적은 수준이었음.

[그림 5]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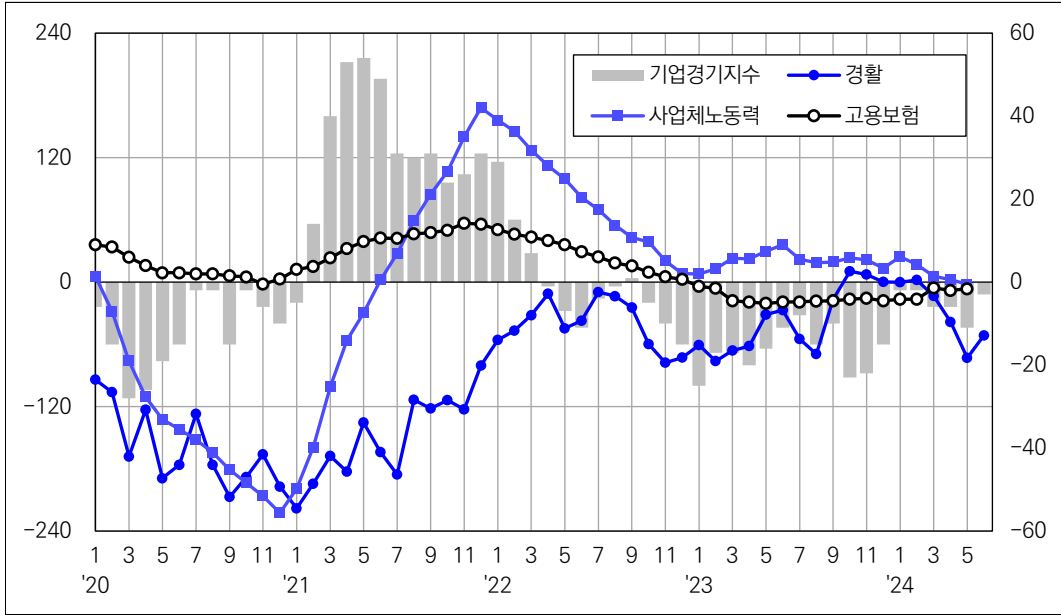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서비스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고용 상황이 양호한 반면, 도소매업, 사업시설지원임대 서비스업 등에서 부진하였음.
- (도소매)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으며 6월 취업자가 5만 1천 명 감소하였음.
 - (숙박음식) 6월 취업자 4만 7천 명이 늘었음.
 - (운수창고) 기업경기지수는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취업자는 증가폭을 유지하며 4만 7천 명 늘었음.
 - (사업시설) 최근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취업자 6만 2천 명이 감소하였음.
 - (보건복지) 여전히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전 산업 중 가장 큰 취업자 증가폭을 유지 중이며, 6월 취업자는 12만 명 증가하였음.

[그림 6]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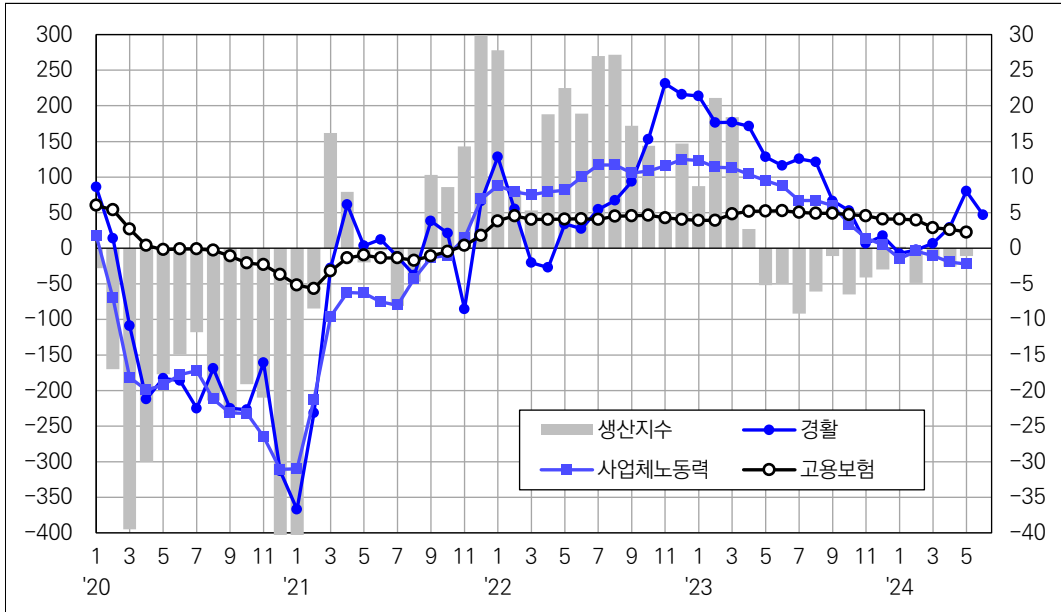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7]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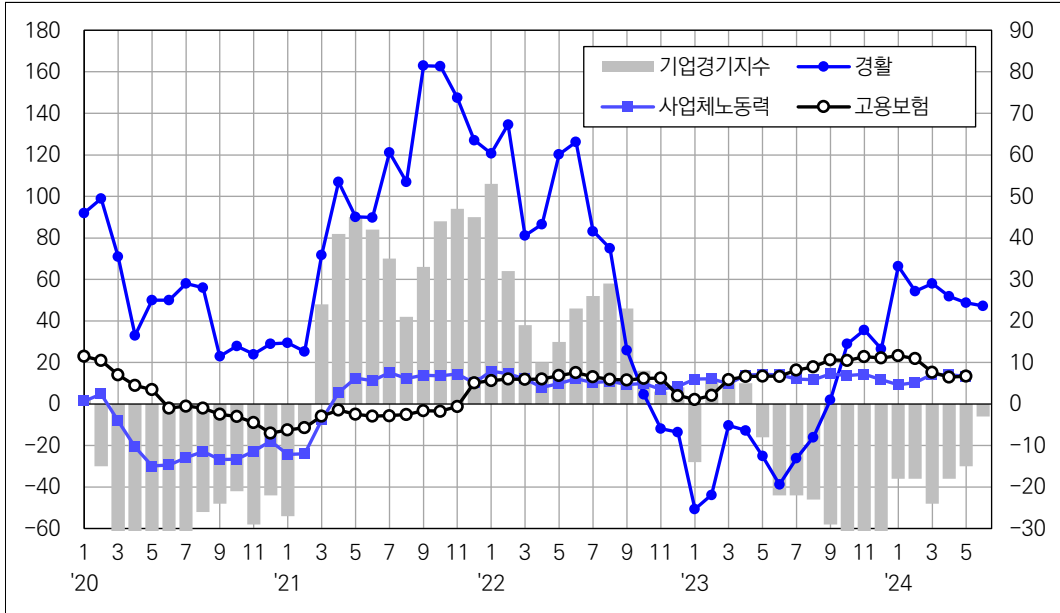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8]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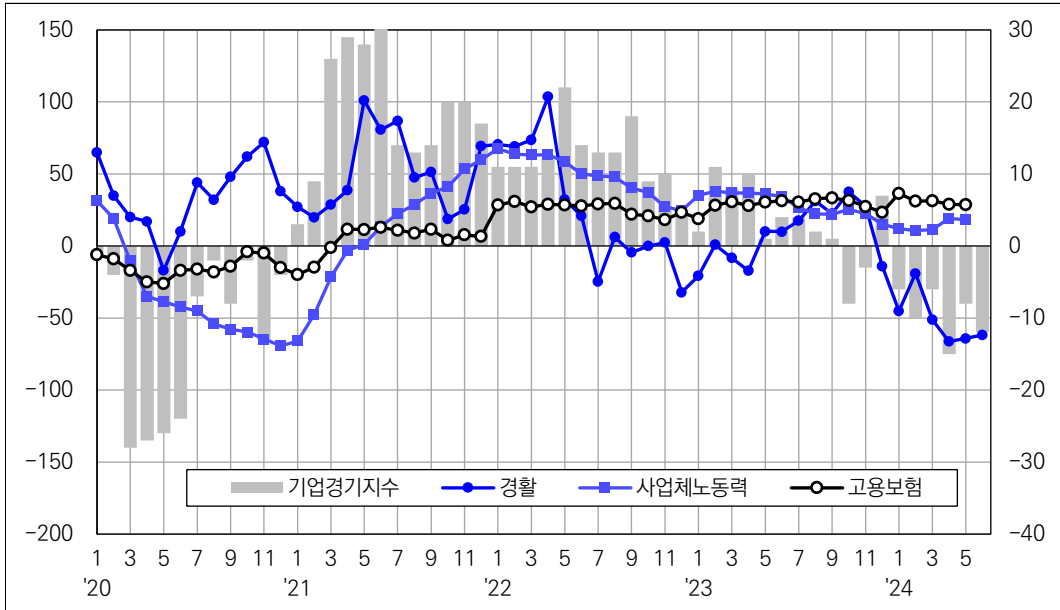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9]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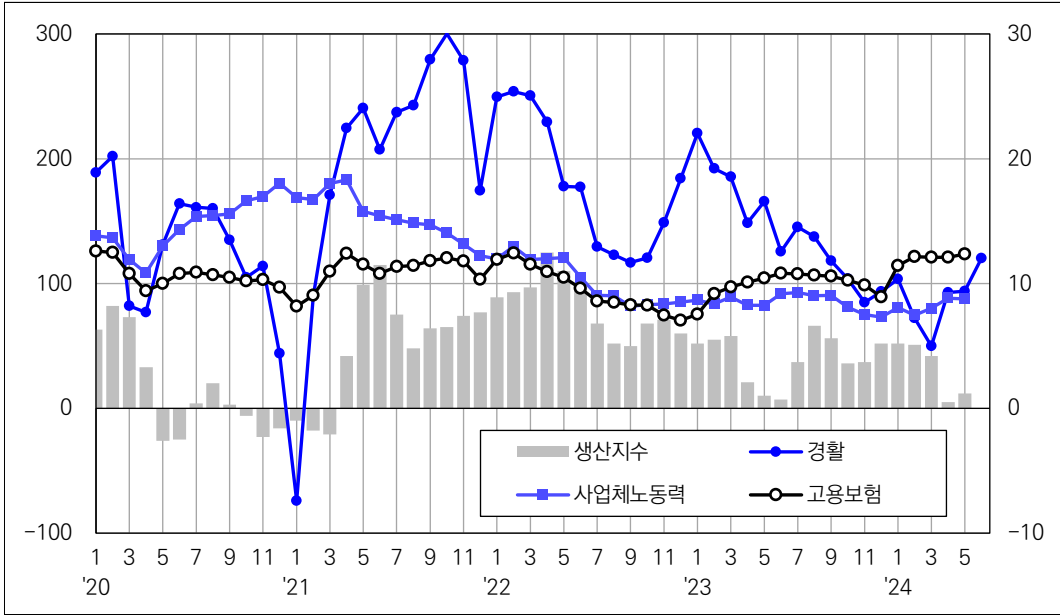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4년 4월 명목임금 전년동월대비 4.3% 상승

- 2024년 4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6만 6천 원(4.3%)이었음.
 - 2024년 4월 상용근로자 임금(410만 원)과 일용근로자 임금(184만 2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4%, 8.2% 상승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임금 증가는 특별급여와 초과급여 증가폭 확대 영향이 컸고,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증가는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건설업 등에서 임금 인상 영향이 컸음.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는 제조업 부문(47.2%)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300인 이상 제조업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71.0% 상승하였음. 제조업 이외에도 건설업(21.9%), 정보통신업(20.4%) 부문에서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평균 상승률(10.8%)을 크게 상회하였음.²⁾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는 전년동월대비 9.4% 상승하였고,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26.8%), 제조업·정보통신업(13.5%) 부문에서 증가폭이 컸음. 이들 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전 산업 평균(5.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8.2% 상승하였음. 이는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업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데다 건설업 등에서 임금이 인상된 영향임.
- (1~4월 평균)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은 412만 8천 원으로 전년동기간대비 2.0% 상승하였음.
 - 전년동기간대비 임금상승폭 둔화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의 감소 영향이 컸음. 특히 300인 이상 제조업 대규모 사업체(-26.8%)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음.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기간대비 5.4% 상승하였고, 특히 부동산업(12.1%), 건설업(8.8%) 등 부문에서 상승폭이 컸음.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체는 상용근로자가 1~299인,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

◆ 2024년 4월 실질임금은 명목임금 상승폭 확대와 물가상승폭 둔화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 (1~4월 평균)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기간대비 하락폭이 둔화됨(-1.0%p).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20	2021	2022	2023	2023		2024		
					1~4월	4월	1~4월	4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527 (1.1)	3,689 (4.6)	3,869 (4.9)	3,966 (2.5)	4,048 (2.3)	3,706 (3.5)	4,128 (2.0)	3,866 (4.3)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719 (0.4)	3,893 (4.7)	4,095 (5.2)	4,211 (2.8)	4,301 (2.8)	3,926 (4.1)	4,128 (2.0)	4,100 (4.4)
	정액급여	3,077 (2.2)	3,181 (3.4)	3,319 (4.3)	3,444 (3.8)	3,420 (4.2)	3,398 (4.1)	3,538 (3.4)	3,517 (3.5)
	초과급여	200 (-0.9)	208 (3.7)	220 (5.7)	227 (3.3)	213 (0.3)	219 (2.1)	232 (8.7)	239 (9.4)
	특별급여	441 (-9.9)	504 (14.3)	556 (10.4)	540 (-2.9)	667 (-3.4)	310 (5.8)	617 (-7.5)	343 (10.8)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636 (7.8)	1,700 (3.9)	1,747 (2.8)	1,785 (2.2)	1,724 (-0.2)	1,703 (-3.4)	1,817 (5.4)	1,842 (8.2)	
소비자물가지수	100.0 (0.5)	102.5 (2.5)	107.7 (5.1)	111.6 (3.6)	110.4 (4.4)	110.8 (3.7)	113.7 (3.0)	114.0 (2.9)	
실질임금증가율	0.5	2.0	-0.2	-1.1	-2.0	-0.1	-1.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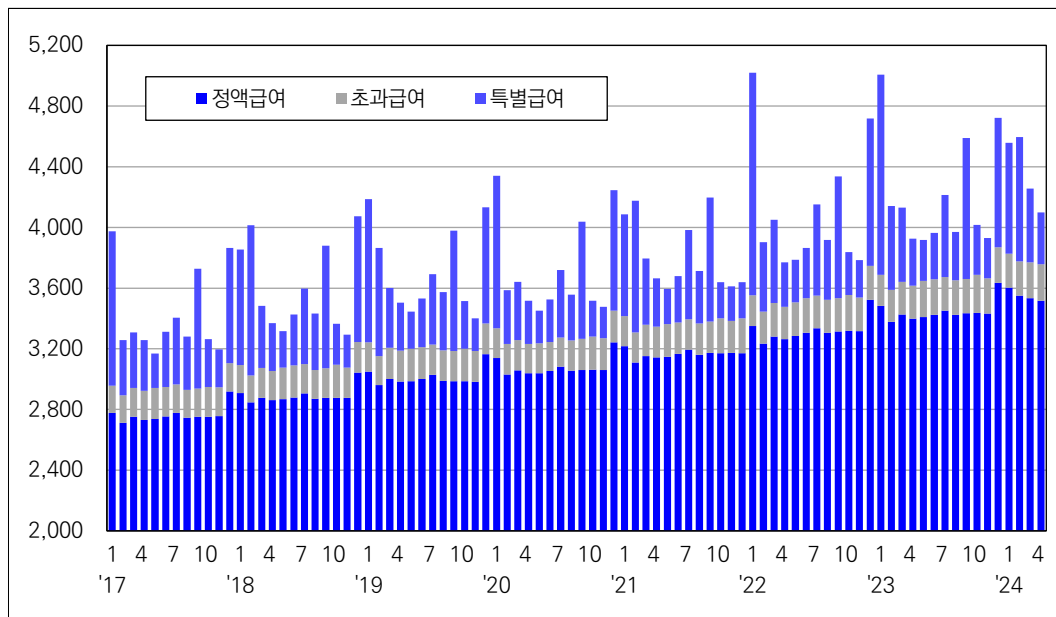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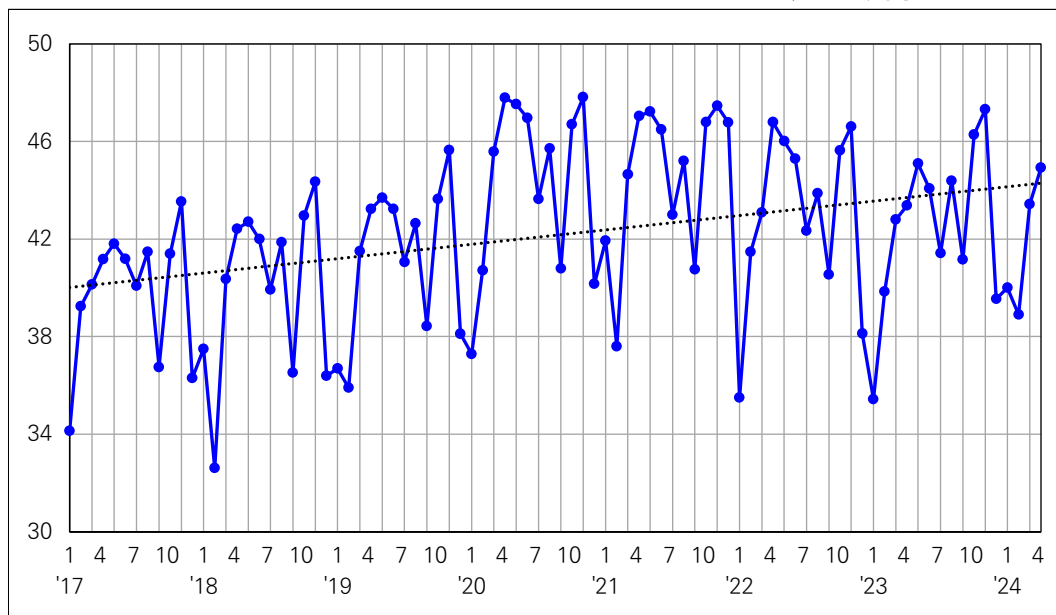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4월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전년동월대비 크게 상승

○ 2024년 4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350만 3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3.2% 상승,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564만 9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8.1% 상승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확대(3.9%p)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10.8%)가 증가한 영향이 컸음. 특히 제조업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71.0% 상승하였음. 한편 중소기업에서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하락하였음.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8.5%, 4.0% 상승하였음.
- (1~4월 평균)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기간대비 3.1% 상승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특별급여의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전년동기간대비 1.0% 하락하였음.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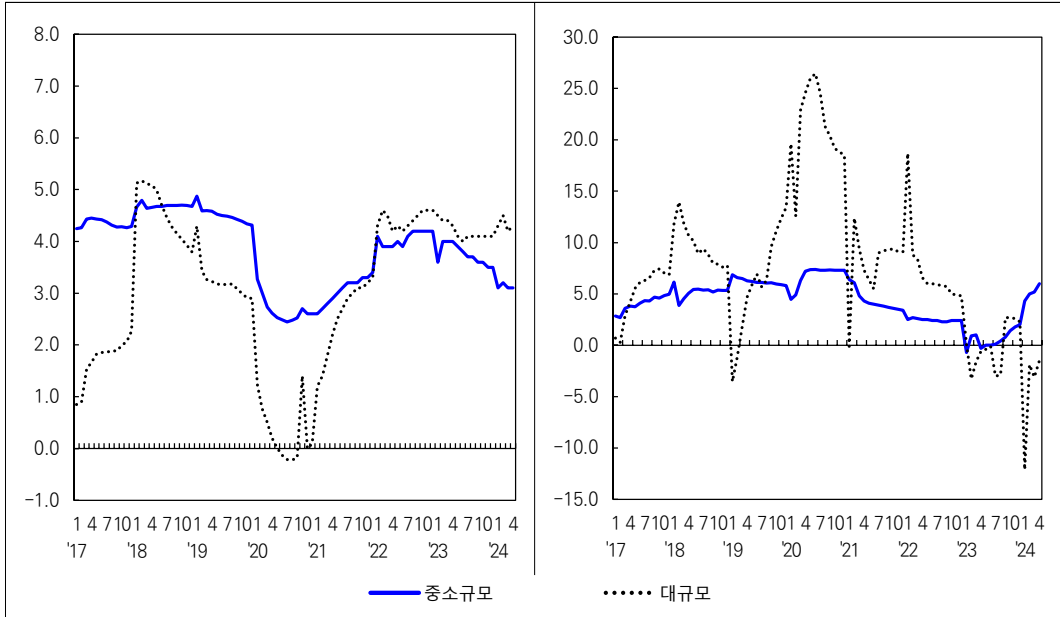
		2022	2023	2023		2024	
				1~4월	4월	1~4월	4월
중소 규모	소 계	3,462 (4.4)	3,537 (2.2)	3,534 (2.1)	3,395 (3.0)	3,643 (3.1)	3,503 (3.2)
	상용임금총액	3,675 (4.7)	3,767 (2.5)	3,764 (2.6)	3,613 (3.8)	3,882 (3.1)	3,727 (3.2)
	정액급여	3,139 (4.2)	3,249 (3.5)	3,227 (4.0)	3,220 (3.9)	3,328 (3.1)	3,323 (3.2)
	초과급여	186 (5.7)	187 (0.8)	176 (-2.5)	181 (-0.4)	191 (8.8)	197 (8.9)
	특별급여	350 (8.7)	331 (-5.3)	362 (-6.1)	211 (4.9)	363 (0.3)	207 (-1.8)
	임시일용임금총액	1,711 (2.4)	1,746 (2.0)	1,685 (-0.3)	1,678 (-3.9)	1,787 (6.0)	1,821 (8.5)
대규모	소 계	5,922 (6.1)	6,071 (2.5)	6,574 (1.8)	5,226 (4.2)	6,505 (-1.0)	5,649 (8.1)
	상용임금총액	6,049 (6.4)	6,212 (2.7)	6,727 (2.0)	5,336 (4.3)	6,659 (-1.0)	5,772 (8.2)
	정액급여	4,155 (4.6)	4,325 (4.1)	4,296 (4.3)	4,193 (4.0)	4,482 (4.3)	4,390 (4.7)
	초과급여	377 (5.5)	406 (7.6)	383 (5.5)	389 (6.2)	415 (8.4)	429 (10.3)
	특별급여	1,516 (11.8)	1,481 (-2.3)	2,049 (-3.2)	754 (4.7)	1,761 (-14.0)	953 (26.4)
	임시일용임금총액	2,321 (4.8)	2,375 (2.3)	2,326 (-0.6)	2,109 (2.4)	2,291 (-1.5)	2,193 (4.0)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4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 증가

- 2024년 4월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제조업(8.4%), 정보통신업(4.6%), 금융 및 보험업·건설업(4.5%)이었음.
 - 위의 산업들은 모두 중소기업에 비해 대규모 사업체에서 큰 폭으로 임금이 상승하였음.
 - 4월 기준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701만 6천 원)이었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10만 2천 원)이었음.
 - (1~4월 평균)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기간대비 임금이 상승하였음. 제조업의 임금은 전년동기간대비 0.4% 하락하였고, 이는 제조업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2	2023	2023		2024	
			1~4월	4월	1~4월	4월
전 산업	3,869 (4.9)	3,966 (2.5)	4,048 (2.3)	3,706 (3.5)	4,128 (2.0)	3,866 (4.3)
광업	4,608 (4.4)	4,636 (0.6)	4,575 (1.0)	4,168 (-3.6)	4,847 (5.9)	4,438 (6.5)
제조업	4,484 (5.8)	4,633 (3.3)	4,835 (2.8)	4,125 (3.8)	4,817 (-0.4)	4,470 (8.4)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907 (2.3)	7,188 (4.1)	7,419(14.1)	6,013 (7.9)	7,951 (7.2)	5,866(-2.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4,168 (1.8)	4,297 (3.1)	4,134 (2.4)	3,918 (2.3)	4,335 (4.8)	4,086 (4.3)
건설업	3,229 (4.0)	3,359 (4.0)	3,341 (3.9)	3,236 (3.1)	3,482 (4.2)	3,383 (4.5)
도매 및 소매업	3,773 (6.3)	3,921 (3.9)	3,955 (5.0)	3,769 (7.5)	4,086 (3.3)	3,855 (2.3)
운수 및 창고업	4,040 (6.5)	4,185 (3.6)	4,156 (6.9)	4,112(12.2)	4,352 (4.7)	4,174 (1.5)
숙박 및 음식점업	2,004 (5.2)	2,097 (4.7)	2,082 (5.9)	2,045 (4.8)	2,155 (3.5)	2,102 (2.8)
정보통신업	4,999 (4.2)	5,120 (2.4)	5,319 (1.2)	4,773 (0.4)	5,556 (4.4)	4,993 (4.6)
금융 및 보험업	7,324 (5.2)	7,338 (0.2)	8,048(-2.7)	6,717 (5.1)	8,068 (0.2)	7,016 (4.5)
부동산업	3,086 (4.5)	3,117 (1.0)	3,146(-0.8)	3,135 (3.1)	3,196 (1.6)	3,080(-1.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76 (5.3)	5,464 (1.6)	5,470 (1.8)	4,993 (1.6)	5,532 (1.1)	5,144 (3.0)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584 (3.7)	2,687 (4.0)	2,660 (3.3)	2,604 (4.3)	2,778 (4.5)	2,713 (4.2)
교육서비스업	3,435 (2.4)	3,508 (2.1)	3,631 (2.2)	3,321 (2.9)	3,752 (3.3)	3,388 (2.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122 (3.6)	3,132 (0.3)	3,112 (0.0)	3,028(-0.5)	3,198 (2.8)	3,111 (2.7)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77 (2.8)	3,058(-0.6)	3,103 (0.8)	2,983 (2.4)	3,151 (1.6)	3,004 (0.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832 (4.9)	3,009 (6.2)	3,021 (6.8)	2,842 (5.5)	3,087 (2.2)	2,944 (3.6)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4월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 증가(1일) 등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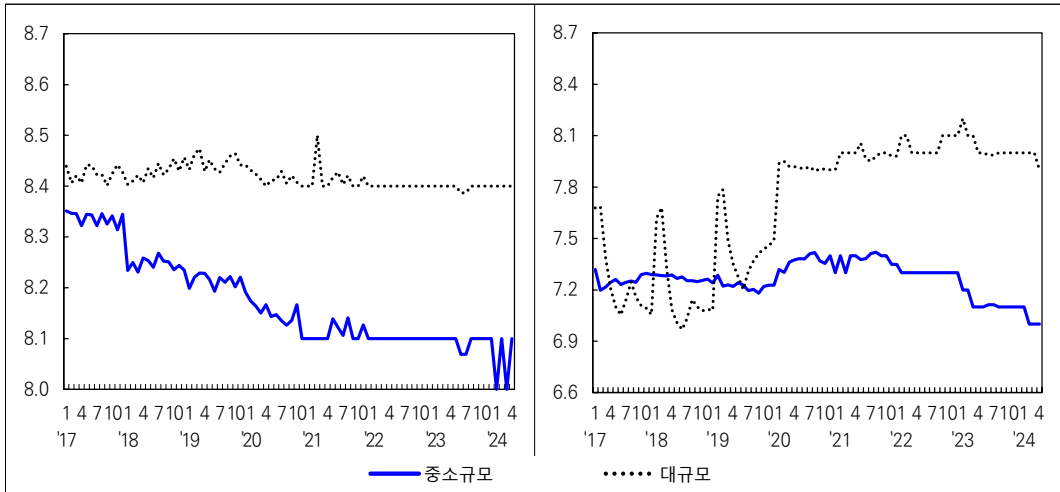
○ 2024년 4월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9.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8시간 증가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167.7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8시간 증가하였고,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87.5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8시간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 월력상 근로일수가 1일 증가한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음.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많고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2024년 4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158.3시간)과 대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164.5시간)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7시간, 5.3시간 증가하였음.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시간을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의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22	2023	2023		2024	
				1~4월	4월	1~4월	4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58.3(-1.2)	155.3(-1.9)	156.0(0.6)	153.6(-5.2)	154.9(-0.7)	158.3(3.1)
	상용 총근로시간	165.9(-1.1)	164.0(-1.1)	164.4(1.5)	162.2(-4.4)	163.9(-0.3)	168.0(3.6)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8.2(-1.2)	156.7(-0.9)	157.5(2.1)	155.0(-4.4)	156.7(-0.5)	160.5(3.5)
	상용 초과근로시간	7.7(0.0)	7.3(-5.2)	6.9(-9.2)	7.1(-6.6)	7.2(4.3)	7.5(5.6)
	임시일용 근로시간	96.4(-1.0)	88.2(-8.5)	88.5(-7.2)	86.5(-11.6)	85.0(-4.0)	85.8(-0.8)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4(-1.2)	160.5(0.1)	160.9(2.7)	159.2(-2.9)	161.0(0.1)	164.5(3.3)
	상용 총근로시간	161.7(-1.0)	162.1(0.2)	162.5(3.0)	160.8(-2.8)	162.7(0.1)	166.3(3.4)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0.6(-1.1)	150.9(0.2)	151.8(3.4)	150.1(-2.9)	151.5(-0.2)	154.9(3.2)
	상용 초과근로시간	11.0(-0.9)	11.2(1.8)	10.7(-1.8)	10.7(-0.9)	11.2(4.7)	11.3(5.6)
	임시일용 근로시간	125.0(-2.3)	117.5(-5.9)	117.8(-4.1)	115.3(-6.4)	115.8(-1.7)	115.9(0.5)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4월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 증가

○ 2024년 4월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정보통신업(4.8%), 광업(4.3%), 제조업(4.1%) 순이었음.

－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176.6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173.7시간), 광업(173.4시간) 순이었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0.8시간)이었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시간, %)

	2022	2023	2023		2024	
			1~4월	4월	1~4월	4월
전 산업	158.7(-1.2)	156.2(-1.6)	156.8(1.0)	154.6(-4.7)	156.0(-0.5)	159.4(3.1)
광업	174.8(-2.8)	168.5(-3.6)	169.5(-1.1)	166.2(-7.7)	168.5(-0.6)	173.4(4.3)
제조업	171.1(-1.4)	170.5(-0.4)	171.2(2.1)	169.7(-3.5)	171.6(0.2)	176.6(4.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8.6(-1.9)	160.0(0.9)	160.8(2.6)	165.2(-3.2)	156.3(-2.8)	157.0(-5.0)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4.4(-1.4)	170.0(-2.5)	170.0(-1.0)	167.1(-6.5)	170.2(0.1)	173.7(3.9)
건설업	134.3(-1.2)	128.7(-4.2)	129.7(-1.6)	127.1(-7.5)	128.8(-0.7)	130.8(2.9)
도매 및 소매업	162.3(-0.9)	159.2(-1.9)	160.3(0.8)	157.5(-5.3)	158.5(-1.1)	161.9(2.8)
운수 및 창고업	160.6(0.2)	160.6(0.0)	160.0(2.4)	158.5(-2.5)	160.1(0.1)	162.9(2.8)
숙박 및 음식점업	146.5(-1.3)	138.8(-5.3)	138.5(-2.8)	136.9(-7.6)	137.2(-0.9)	138.2(0.9)
정보통신업	162.7(-0.9)	162.2(-0.3)	162.5(2.3)	159.2(-4.6)	163.1(0.4)	166.9(4.8)
금융 및 보험업	159.8(-1.3)	159.3(-0.3)	161.2(3.6)	157.5(-3.9)	159.9(-0.8)	163.0(3.5)
부동산업	169.4(-1.4)	167.5(-1.1)	167.6(1.3)	165.5(-3.6)	167.4(-0.1)	170.0(2.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3(-0.8)	158.8(-0.9)	159.8(2.0)	157.5(-4.6)	159.2(-0.4)	163.4(3.7)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59.8(-1.4)	158.2(-1.0)	158.3(1.2)	155.4(-4.1)	158.4(0.1)	161.1(3.7)
교육서비스업	136.1(-0.8)	135.9(-0.1)	136.3(3.1)	135.0(-2.8)	134.5(-1.3)	139.2(3.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5.3(-1.9)	150.7(-3.0)	150.9(-0.5)	148.2(-6.6)	149.0(-1.3)	152.0(2.6)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0.8(-1.2)	148.2(-1.7)	149.0(1.2)	147.4(-4.5)	145.8(-2.1)	149.6(1.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0.3(-1.3)	160.3(0.0)	160.8(2.3)	158.5(-3.3)	159.5(-0.8)	162.1(2.3)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4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9건
 - － 6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33건)보다 14건 적은 수치임.
- 2024년 6월 조정성립률 20.0%
 - － 6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26.7%보다 6.7%p 낮은 수치임.

〈표 1〉 2023년, 2024년 6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4. 6.	19	7	1	0	1	4	0	4	0	2	16	20.0%
2023. 6.	33	19	4	2	2	11	1	10	0	4	23	26.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4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0건
 - － 6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건)보다 적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

〈표 2〉 2023년, 2024년 6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4. 6.	0	0	0	0	0	0
2023. 6.	1	0	0	0	0	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4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225건
 - 6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207건)보다 18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6.1%(40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3.9%(113건)를 차지함.

〈표 3〉 2023년, 2024년 6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6.	225	153	35	5	75	3	24	11	650
2023. 6.	207	181	44	7	86	6	17	21	54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4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¹⁾ 건수는 12건
 - 6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7건)보다 5건 많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0.0%(0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100.0%(8건)를 차지함.

〈표 4〉 2023년, 2024년 6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6.	12	8	0	0	7	1	0	0	15
2023. 6.	7	10	1	0	1	0	8	0	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전국삼성전자노조 무기한 파업 시작

- 7월 10일 기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였음.
- 전삼노는 이날 오전 누리집을 통해 “1차 총파업 이후에도 사쪽의 대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여 2차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음.
- 전삼노는 회사에 △전 조합원 노조창립휴가 1일 보장 △전 조합원 기본임금 3.5% 인상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요구로 내세웠지만, 7월 8일 1차 파업 돌입 이후 공식적인 노사 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전삼노에 따르면 1차 총파업에는 조합원 6,540명이 참가했고, 직군별로는 설비·제조·개발공정에서 5,211명, 사업장별로는 반도체 생산라인이 있는 기흥·화성·평택사업장에서 4,477명이 참가했음.
- 전삼노는 지난해 임금교섭을 타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1월부터 임금 인상 및 투명성, 노동 조건 개선 등을 내걸며 2023년과 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진행해왔음.
-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된 가운데, 전삼노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음. 이후 두 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전삼노는 지난 5월 28일 회사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음.
- 노사는 6월 13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만나 교섭 재개를 위한 만남을 가졌음. 다음 날 중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하면서 노조 파업(집단 연차 사용) 이후 일주일 만에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것처럼 보였음.
-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는 6월 18~27일 3차례 사후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 사측은 여가포인트 50만 원 지급을 뼈대로 한 추가제시안을 내놓았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 노조는 7월 1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무노동 총파업으로 투쟁한다”며 파업 선언을 했음.
- 전삼노가 밝히는 조합원 수는 약 2만 8,400명임. 전체 직원 12만 4,804명(2023년 말 기준) 가운데 22.8%로, 삼성전자 노조 가운데 최대임.

◆ 화성 아리셀 '산재 참사'로 노동자 23명 화재로 숨져

-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음.
-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음.
- 이번 참사는 아리셀 공장 3동 2층의 배터리 제조 작업장에 쌓여 있던 배터리들이 폭발하면서 발생했음.
- 당시 현장에는 적절한 대피로도 확보돼 있지 않았음. 해당 건물 비상 출입구가 두 개였지만, 폭발이 일어난 배터리들이 두 출입구로 나가는 문 앞에 적재돼 있었음. 이 때문에 노동자들 모두 탈출하지 못하고 질식사했음.
- 아리셀 사측은 전체 노동자 103명 중 51명을 메이셀이라는 업체에서 공급받았음. 메이셀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
- 아리셀 측은 합법 도급이라고 주장하지만, 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밝혀졌고, 오히려 불법 파견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음.
- 과거 아리셀 공장이 생산하던 것과 같은 리튬 배터리와 그 생산 과정의 안전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음.
- 한국산학기술학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육군에서만 95건의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었음.
- 참사가 난 아리셀 공장이 바로 군납용 리튬 배터리를 생산하던 곳임. 2022년 SK 데이터센터 화재도 리튬 배터리가 원인이었음.
- 이외에도 이번 참사는 상당수 이주민들이 한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비극적으로 드러냄. 지난해 한국 전체 산재 사망자(812명) 중 외국인 노동자가 약 10%(85명)를 차지했음.
-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현재순 화섬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아리셀 산재참사를 사람(조직) 요인, 물질·기계 요인, 물리환경 요인, 사회경제환경 요인으로 나누고 설명하였음.
- 이 중 사고단계에서 사람(조직) 요인은 고농도의 전지열분해산물(SO₂)에 급성 노출되었고, 출입구의 발화·폭발로 반대 방향으로 피해서 사고가 커졌음.
- 물질·기계 요인으로는 플라스틱 용기에 쌓아놓은 1차 전지 완제품 중 하나의 전지에서 단락 등 미상의 원인으로 벤트·발화·파열·폭발하였음.
- 물리환경 요인으로는 덥고 습한 장마철이고, 전날 비가 와서 습도가 높은 상태였고, D급

- 소화기(금속화재소화기)· 공기호흡기가 미비치 되었음.
- 사회경제환경 요인으로는 방위산업 당국·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공급망 내 안전보건에 대한 안일함이 컸음.

〈표 5〉 아리셀 중대재해 사고원인 분석

	사람(조직) 요인	물질·기계 요인	물리환경 요인	사회경제환경 요인
사고 이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위험성평가, 보건 관리자 미선임하에서 다수의 파견근로자 사용 - 파견근로자(불법파견)이므로 작업현장에 어두움 - 물질 유해위험정보, 비상 대응요령 교육·훈련 미시행 - 이주민근로자는 한국어와 기업조직문화에 어두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염화티오닐 1차 전지 기술의 개발(1970년대 군사용) - 리튬·염화티오닐의 유해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개발 지연 (일반소비자용도 지양 중 심 리튬·염화티오닐은 산업법의 위험물질) - 특히 완제품 안정화 단계에서의 운송·보관 과정의 압착 등으로 인한 벤트·발화 위험 상존(빈번한 군창고 화재 등) - 포장·검수공정에서 완제품을 높게 쌓음(1.5m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터리 완제품 보관용 별도 공간을 없앴 출입구 외 별도 비상구 확보하지 않음(산안법령) 좁은 공간에 완제품 다량 보관 완제품 발화 관련 위험성 평가·대책수립 미흡(화학물질 관련 위험성 평가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미터기(전력·수도 계량기 CCTV 등) 확대·보급에 따른 고밀도 전지의 필요성 증대(10년 이상 사용)[4차산업혁명·신재생에너지 수요] -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전쟁으로 군사용 전지 수요의 급팽창과 해당 수요의 유동성 편차가 큼 - 방위산업 당국·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공급망 내 안전보건에 대해 안일함(같은 원인에 의한 군내 보관 창고 연속화재에도 대책 수립 미흡) - 산업부·배터리산업의 1차 전지 관련 표준 제정·보급 미흡 - 노동보호당국의 산안법·파견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효과적 행정집행의 실패(위험성평가 인정 등)
사고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농도의 전지 열분해 산물 SO2(1.7% 이상)에 급성노출 - 출입구의 발화·폭발로 반대 방향으로 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용기에 쌓아놓은 1차 전지 완제품 중 하나의 전지에서 단락 등 미상의 원인으로 벤트·발화·파열·폭발 - 열 폭주 현상으로 고농도의 전지 열분해산물(SO2 등) 급격히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덥고 습한 장마철이고 전 날 비 와서 습도 높음 - D급 소화기(금속화재소화기)· 공기호흡기 미비치 - 위험물질 제조·취급 장소에 요구되는 별도 비상구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용 등 리튬 1차 전지 수요는 짧은 시기에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파견근로자 수 많음 - 환경부·소방청·노동부 안전당국의 협조체계 미흡(소방청 점검 결과, 환경부 위해계획 등) - 방위산업 당국· 대기업을 정점으로 한 공급망 내 안전보건에 대한 안일함(군특수용 등 방위산업에 대한 안전법령 특례가 많음)

〈표 5〉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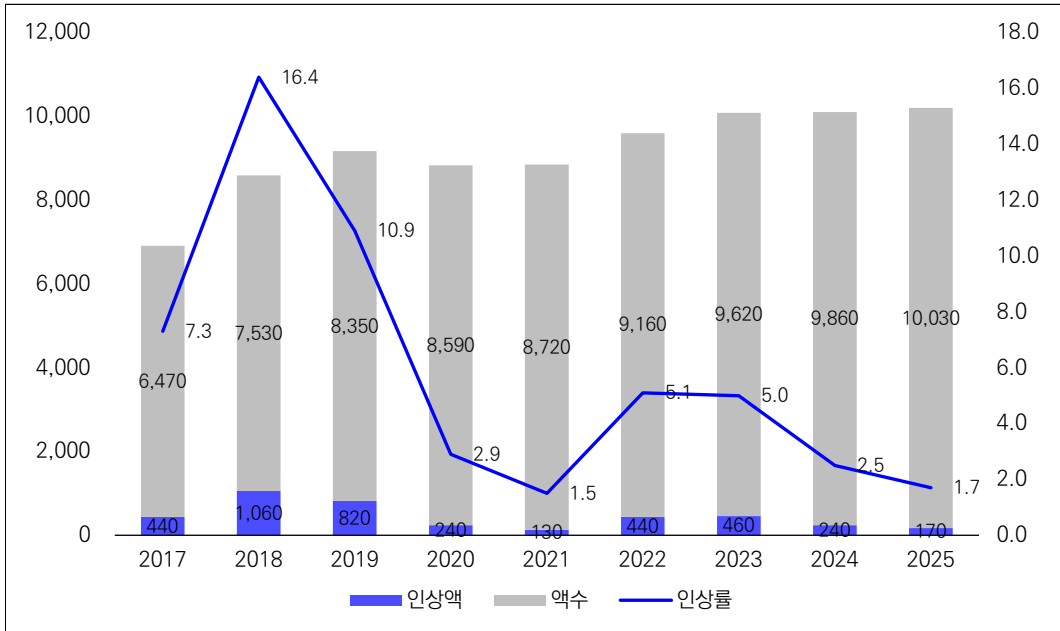
	사람(조직) 요인	물질·기계 요인	물리환경 요인	사회경제환경 요인
사고 이후 단계	- 근로자 23명 사망(이주민 근로자 18명 포함) -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지역 주민 경보 발령 여부 확인 -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지역 주민 경보 발령 여부 확인 - 폭발·화재 형태의 재해이고 파견근로자 신원 확인 어려움 - 중대재해처벌법에 수사 대상 중대산업재해(경찰·환경부) 관련 법에 따른 조사	- 열 폭주 현상으로 고농도의 전지 열분해산물(SO2 등) 급격히 발생·비산·회석 - 사고 발생 직후 소방당국이 사업장의 물질에 관한 정보의 입수 과정 모니터링 필요 - 소방당국, 지자체 리튬 1·2차 전지 업체 일제 점검(자원 낭비)	- 환경당국 열분해산물 모니터링(불검출 또는 급성 중독 기준 미만)	- 리튬이온전지(2차전지) 관련 정보가 주로 보도되었고 배터리산업 전체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 -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보건 현실에 관한 새로운 수사, '위험의 이주화'가 만들어짐 - 공급망인 배터리산업협회, 방위산업 당국과 관련 협회 등은 전혀 입장이 없음 -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보건 관리 부재에 대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책 필요(환경부·소방청·산업부 포함) : 사업장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제도의 발전

자료 : 현재순 외 (2024. 7. 22.),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7월 15일 2025년 최저임금이 2024년 대비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됨.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임.
-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2~4차 수정안을 제출했음.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11,150원, 11,000원, 10,840원을,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9,900원, 9,920원, 9,940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대비 2.6% 인상된 10,12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 대비 1.7% 인상된 10,030원을 최종제시안으로 제출했음.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준 47만 9,000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됨.
-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하게 됨.

[그림 1]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 편의점 업계 최초 CU 노조 설립

- 6월 13일 사무금융노조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노동자들이 6월 12일 노조 BGF리테일지부 설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유통업체로, 지주사는 BGF이고 종속사로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BGF네트웍스, BGF핀링크, BFG보험서비스, BFG포스트, 사우스스프링스 등이 있음.
- BGF리테일의 종속사로는 BFG로지스, BGF푸드, BGF휴먼넷, 씨펙스로지스틱 등이 있음.
- BGF리테일 노조 설립은 복지와 성과급 축소가 발화점이 됐고, BGF리테일은 지난해 성과급을 2022년도 대비 30%가량 줄여 지급했음.
- 당시 민승일 대표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2023년 실적이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사유를 밝혔지만 실제 성과는 달랐음.
- BGF리테일은 지난해 영업이익 2,532억 원을 기록하면서 2022년보다 0.3% 증가했음. 매출은 같은 기간 7.6%나 증가했음. 역대 최대 실적임.
- 성과급 축소를 단행하자 일부 직원들은 올해 2월 자발적 모금을 통해 트럭과 스피커를 이용한 시위를 서울 강남구 회사 본사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음.
- BGF리테일 노조 설립을 준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직원 3분의 1이 넘는 1,300여 명이 몰리기도 했음.

- BGF리테일지부는 설립결의문에서 “우리는 회사의 기본방침이라는 미명 아래 ‘시키면 시키는 대로’가 미덕인 것처럼 포장하는 회사에서 살아왔다”며 “우리는 언제까지 회사의 요구대로 묵묵히 따라야만 하나. 우리는 회사가 쓰고 버리는 부속품이 아니다”라고 했음.
- BGF리테일 직원은 3,300명가량임. 조합원은 영업직을 중심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고 지부는 정확한 조합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금속노조 사업장 80%, 기본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아**

- 6월 19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영향 평가’ 토론회에서 올해 2월 118개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취합한 급여명세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음.
- 분석결과 118개 사업장 중 94곳(79.7%)에서 기본시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았음.
-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이전에는 ‘최저임금=기본급’이 성립할 정도로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사례를 찾기 어려웠으나, 개편 이후에는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은 사례가 드물어졌음.
- 또한 118개 사업장 중 21곳(17.8%)은 통상시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았음.
- 이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항목이 늘어난 데다 사용자들이 상여금 지급 시 ‘재직자 조건’을 붙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 사례로 제시된 A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기본시급 6,315원, 통상시급 12,004원, 2교대시급 7,216원으로 기본(시)급은 턱없이 낮았으나 통상(시)급은 법정 최저시급을 넘어서고 있음.
- 이는 정기상여금의 월할 지급으로 최저임금 산입만이 아니라 통상임금에도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 오 실장은 이날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사용자들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이 유리해진다”고 말했음.

〈표 6〉 기본급 수준이 낮은 사례

A 사업장	2023년 1월	2023년 12월	2024년 1월
기본시급	5,700	6,115	6,315
통상시급	10,900	11,645	12,004
2교대시급	6,557	7,002	7,216

자료 : 오민규(2024. 6. 9.),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영향 평가 국회토론회」.

◆ 현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합헌”

-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9조의2 1항에 대해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 조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2개 이상이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는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었음.
- 현재는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는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 29조의2 4항, ‘비교섭 노조의 쟁의행위(단체행동권)를 금지’한 같은 법 29조의5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음.
- 현재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타당하다고 봤음.
- 현재는 “사업장 내보다 많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돼 사용자와 교섭에 나서게 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라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뤄 교섭에 임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교섭대표 노조가 획득한 협상의 결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밝혔음.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비교섭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영향을 받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음.

◆ 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노동자는 유해 요인에 더 많이 노출

- 6월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강태선 교수 연구팀은 안전보건 국제학술지 ‘SH@W’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업보건 유해요인과 보호자원 불평등: 한국 제조업 노동자 연구’ 논문을 게재했음.
- 분석 결과 5인 미만, 5~49인 사업장 노동자는 유기용제 증기,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불편한 자세, 정서적으로 불안한 환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비율이 5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보다 높았음.
- 물리·화학적 위험 항목인 ‘심한 소음’ 노출은 5인 미만이 37.6%, 5~49인이 34.9%, 50인 이상이 33.4%였음.
- 인간공학적 위험 항목인 ‘반복적인 손·팔 동작’은 5인 미만이 83.4%, 5~49인이 76.4%, 50인 이상이 73.7%였음.
- 심리적 위험 항목인 ‘화가 난 고객 등 제3자 상대’는 5인 미만이 13.3%, 5~49인이 7.9%, 50인 이상이 5.7%였음.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유해요인에 더 많이 노출돼 있었지만 조직적 보호자원은 현저히 부족했음.
-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개선 요구를 대변할 노조·노동자협의회가 있는 비율은 5인 미만이 2.7%, 5~49인이 7.6%, 50인 이상이 37.4%였음.
- 안전보건대표자·안전보건위원회가 있는 비율도 5인 미만이 2.2%, 5~49인이 12.5%, 50인 이상이 42.7%였음.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제도적으로도 사각지대에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뼈대인 2장(안전보건관리체제)과 3장(안전보건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임.
- 논문은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법적 규제, 보호자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졸음운전 늘어”

- 6월 18일 공공운수노조의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현장실태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일몰 뒤 화물노동자의 수면시간은 감소했고 과속 빈도는 늘어났음.
- 조사결과 대부분 응답자가 과로하고 있었음. 수면시간을 물었더니 응답자 481명 중 줄었다고 답한 이는 87.1%였음.
- 잠자는 시간이 줄자 위험운전이 시작됐음. 졸음운전이 증가했다는 이는 84.6%나 됐고, 과속이 늘었다는 응답자도 76.1%나 됐음.
- 과속 이유를 물으니 382명의 응답자 중 68.6%가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는 답을 골랐음. 안전운임제라는 보호장치가 사라지자 사고 위험이 늘어난 것임.
-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12.7시간을 운행한다고 답했음. 안전운임제 일몰 전과 비교했을 때 한 주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음.
- 응답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 21일을 곱하니 월평균 266.7시간 일한다는 결과가 나왔음.
-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57.6시간이었음. 화물노동자는 임금근로자보다 매달 109.1시간을 더 일하는 셈임.
-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1~25일까지 이뤄졌음. 응답자는 513명으로 운송 품목은 다양했음.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노동자의 노동조건 변화까지 살피기 위해 품목을 구분하

지 않았음.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은 컨테이너와 BCT(시멘트 운반) 노동자는 각각 68.4%, 5.8%이며 미적용 차종·품목은 25.8%였음.

◆ 배민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가입제 폐지

- 6월 28일 배달의민족은 배민커넥트 앱에 ‘유상운송보험 유효성 검사폐지 안내’ 공지를 올렸음.
- 공지에 따르면 7월 2일부터 오토바이·자동차 수단 이용 라이더 대상 △신규가입 단계에서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개인유상보험 서류 제출 및 검증 △은행 시작 시 보험 유효 여부 확인 등 절차가 생략됨.
- 배달 일을 하는 라이더는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필요함.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가정용보험 가입으로 배달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 다만 유상운송보험료가 보통 200만~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가정용보험을 들고 편법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음.
- 배달의민족은 그동안 배달라이더와 신규 계약 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필수로 했음. 확인 절차에서 라이더의 보험계약 서류를 의무 제출하게 해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유도했으나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것임.
-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자율적인 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라이더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회사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시간제보험을 개발하고 보험료 인하, 공제조합 설립에 참여하는 등 노력해 왔다”고 밝혔음. 이어 “라이더에게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 미확인 라이더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보험 가입 유도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하였음.

◆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 6월 9일 고용노동부는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며 미조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부서 신설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임.
-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노동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신설한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근로자 이음센터와 쉼터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을 우선 과제로 꼽았음. 지역별 취약근로자 소통 플랫폼 구축·운영도 준비할 것으로 보임.

- 분쟁조정과 정책기능도 일부 수행함. 공제회 활성화와 표준계약서 확산,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임.
-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음. 이 법은 공제회 설치 지원, 질병·상해·실업 시 보호,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이 뼈대임.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 6월 30일 정부가 배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주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하였음. 동료 직원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지원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음. 상반기까지는 최초 5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80%를 지급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임.
-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음.

◆ 직장인 10명 중 1명 "주 52시간 이상 일해"

- 6월 9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조사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노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였음. 초과노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 363명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을 살펴봤더니 6시간 이하가 39.1%였음.
- 주당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은 25.4%였음. 직장인 1천 명 중 92명이 주 52시간 이상 일한다는 얘기임. 이런 답변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
- 적절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 상한을 물었더니 '48시간'이라는 답변이 42.5%로 가장 많았고 '52시간'(35.2%)이 뒤를 이었음.
-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가까운 응답자(77.7%)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셈임.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답은 22.3%에 그쳤음.

- 적절한 하루 연장근로는 '2시간'이 53.6%로 가장 많았음. 하루 노동시간이 최대 10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임. 4시간은 29.4%, 6시간은 10.8%, 8시간 이상은 6.2%였음.

◆ 휴일 불규칙한 노동자, 일·생활 양립 만족도 낮아

- 6월 25일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주말 구분 없이 근무 일정이 불규칙한 노동자들의 일·생활 양립 만족도가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말근무를 5회 이상 하는 노동자들이 특히 낮았고,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였음.
- 조사결과 일생활균형 만족도는 3.73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 업종 노동자 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4.44점보다 낮은 수치임.
- 특히 주말근무를 한 달에 5회 이상 하는 노동자에게서는 일·생활 불만족 응답 비율이 더 높았음. 노동시간, 일·생활 균형, 전반적 직무만족도에서 각각 49.21%, 69.82%, 72.0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음. 주말근무 4회 이하 노동자는 각각 35.08%, 49.52%, 52.29%였음.
- 노동자들은 건강에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말근무가 월 5회 이상인 응답자 18.3%는 중등도 이상 우울 증상을 겪고 있었고, 66.2%는 수면 장애를 경험했다고 답했음. 월 4회 이하는 각각 12.5%, 58.7%였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주말근무가 많은 서비스연맹 산하 유통분과(2,516명)와 관광레저분과(205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음.

◆ 보건의로 노동자 76% “주 4일제 도입 필요”

- 7월 3일 보건의로노조는 지난 1월 29일부터 한 달간 조합원 4만 760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조사결과 주 4일 근무제와 관련해 응답자 75.6%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매우 필요하다'는 답이 42.5%, '필요하다'는 답이 33.1%였음.
- 직군별로는 간호직 중 80.4%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보건직(73.4%), 약무직(70.5%), 사무·행정직(70.4%)이 뒤를 이었음.
- 주 4일 근무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에 도움을

- 줄 수 있을 것 같아서'가 44.3%로 가장 많았음.
- 최근 3개월간 연장근무 경험에 대해 물어 보니 '60분 이상'도 22.5%였음. 5명 중 1명꼴로 하루 1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한 셈임. 연장근무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응답자 가운데 '전부 보상받는다'고 답한 경우는 33.5%에 그쳤음.
 - 식사할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46.7%로, 절반 이상이 식사를 건너뛰면서 일을 하고 있었음. 주 평균 4~5회 식사를 거른다고 답한 조합원도 18.4%나 됐음.
 - 최근 5년간 이직을 고려해 본 적 있다고 답한 이는 64.6%였음. '가끔씩 생각한 적이 있다'는 답은 44.9%였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답은 19.7%였음. 이직 고려 사유는 '열악한 근무조건, 노동강도'가 26.4%로 가장 많았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